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내버스·마을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 차량) 운송사업자에 대해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택시에 대한 공영차고지 사용이 추진되고 있는 바,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담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